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와 한국의 반덤핑제도 대응전략

Promo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Korea's Anti-dumping Countermeasure

오문갑(Moon-Kap Oh)

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지역무역협정의 반덤핑제도 적용 규정 | 참고문헌 |
| III.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경제적 효과 | Abstract |
| IV. 지역무역협정의 반덤핑제도 대응전략 | |

국문초록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지역무역협정, 반덤핑 제도, 대응전략

I. 서론

세계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체제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경제통합의 심화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으로써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WTO체제하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 등을 통한 경제블록화 현상인 지역주의(regionalism)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현상은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 등을 결성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지역주의에 의한 세계시장의 분할 혹은 폐쇄적 블록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WTO체제 출범 이후 WTO회원국들이 다자간 세계무역자유화보다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RTA는 오히려 더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국가들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보다는 FTA 등의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통상 이익의 추구에 한계를 느낀 많은 WTO 회원국들은 자국의 통상이익을 위하여 양자 간 형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있어 중요한 점은 체결국간의 교역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증가는 WTO가 근간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회원국가간의 특혜무역을 인정하는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무역을 차별화한다는 점에서 WTO체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상충관계(trade-off)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WTO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장치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규범의 불명확성 및 모호성으로 인해 동 규범의 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WTO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덤핑조치가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에 있어서 무역구제제도로서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또한 초국가적인 기업의 출현이나

기업 내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교역상황에서 덤핑에 대한 조치가 효과성이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선행연구를 보면, 지역무역협정에서 가맹국의 반덤핑정책과 경쟁정책의 통합에 의해 반덤핑법의 폐지나 적용면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 및 투자의 자유, 가맹국 내의 기업 및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능력의 교육, 경쟁법의 존재 및 집행 등이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및 그에 관련한 제 정책의 실질적인 조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또한 김관원과 고준성, 이재영, 임병우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FTA 체결에 있어 국가별 협상을 통하여 현재 반덤핑제도의 원용, 또는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FTA를 중심으로 교역국간에 반덤핑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이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의 FTA 체결에 반덤핑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 FTA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 FTA가 체결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FTA를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지역무역협정으로 칭함)으로 확대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지역무역협정 체결국간에 반덤핑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나아가 향후 한국의 FTA 체결과정에 있어서 반덤핑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처할지 우리나라의 반덤핑 운영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축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지역무역협정의 반덤핑제도 적용 규정

1. 지역무역협정의 반덤핑제도 적용 규정

1) 캐나다-칠레 FTA

캐나다-칠레 FTA에서는 당사국들 간에 반덤핑조치의 이용가능성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반덤핑조치의 이용 배제는 관세의 폐지를 조건부로 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즉 일정한 제품¹⁾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당해 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는 날로부터 동

FTA 당사국들 간의 역내 무역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종료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이 2003년 1월 1일 이후 연장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²⁾ 즉, 동 협정에서는 반덤핑조치의 이용을 과도기간 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

2) EFTA-싱가포르

EFTA와 싱가포르 FTA의 경우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에 규정된 반덤핑조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⁴⁾ 당사자들 간에 있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동 협정에서는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상 경쟁규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3) EU

EU는 FTA의 형태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변화과정에서의 반덤핑규정을 어떠한 식으로 운영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거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경우 경쟁정책에 관한 장이 별도로 조약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시장 통합이 이루어진 관계로 공동시장에 속한 당사국들 간에 있어서는 공동의 경쟁정책이 적용되고 있고, 반덤핑관세가 자리 잡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 다만 과도기간에 한하여 반덤핑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EC(European Communities)의 역내에 있어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 관세동맹으로 통일된 경쟁법을 가지고 있었다.⁵⁾ 그러나 가맹국 간에 경쟁법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EC 경쟁법은 EC 가맹국의 국내에 한정하는 경쟁제한은 가맹국 경쟁법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으로 가맹국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저해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EC 가맹국간의 반덤핑법은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통일된 반덤핑법이 제정되었다. 가맹국의 국내제조업자는 가맹국 이외의 나라로부터 덤핑에 의해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만 반덤핑을 근거로 제소할 수 있다.⁶⁾ 한편 EC내의 제조업자에 의한 반경쟁적

1) HS 8단위로 규정된 제품

2) OECD,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2003, p. 134.』

3) 고준성, “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분석-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산업연구원, 2003.10, 제12권 제1호 p. 155.

4) N. Nohria and N. Venkatraman, “Interorganization Information System via Information Technology: A Network Analytic Perspective”, Working Paper No. 1909-87, Sloan School of Management, MIT, 1987, p.77.

5) 김관원, “반덤핑법 금지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토 -지역무역협정에 있어서의 반덤핑정책과 경쟁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12집, 2002. 8, pp. 343~344.

6) J. L. Johnson, J. B. Cullen, T. Sakano, and H. Takenouchi, Setting the Stage for Trust and Strategic Integration in Japanese-U.S. Cooperative Allianc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7, No. 5, 1996, pp.981-1004.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EC 가맹국의 제조업자가 EC 경쟁법에 근거하여 제소하면 된다.

4) ANZCERTA

ANZCERTA⁷⁾가 1983년 1월 발효된 후 1986년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양국 간의 무역에 있어서의 반덤핑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와의 협의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아의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경쟁법을 제정하였다.⁸⁾ ANZCERTA 의정서 제4조는 “상대국 원산의 상품에 대해서 반덤핑법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양국의 경쟁법으로 규제한다. 의정서 제4조에 따라 1990년 7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의정서를 시행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이전부터 각각 국내에 있어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거래관행 법(Trade Practices Act 1974)과 상업 법(Commerce Act 1986)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ANZCERTA의정서 제4조에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합친 환다스만(Trans-Tasman)시장에 있어서의 시장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1974년 거래관행 법 제46조와 뉴질랜드의 1986년 상업 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반경쟁적인 ‘시장력 남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거래관행 법 제46조에 새로운 조항으로서 제46조 A를, 그리고 뉴질랜드 상업 법 제36조에는 제36조 A를 끼워 넣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환다스만 시장 내의 반경쟁적 행위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법에 의해 규제할 수 있도록 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2. 반덤핑법의 유형 분석

1) 한국 · 칠레 FTA

양국 간의 협상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양허 적용배제를 제한하였으나 농업국인 칠레는 예외를 두는 것에 반대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칠레로 수출되는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양허의 배제를 대가로 일부 민감한 농산품에 대한 관세양허의 적용배제를 얻어내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 방향에 대한 합의에 기초하여 다시 양국은 관세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협정문을 타결시켰다.

7) Australia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1983년 1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사이에서 양국의 경제를 점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8) Bernard M. Hoekman and Petros C. Mavroidis, “Dumping, Antidumping and Antitrust”, Journal of World Trade 30(1), 1996, p. 34.

FTA의 협상과정에서는 FTA 체결당사국간의 산업과 무역구조가 상호 보완적이거나 아니면 경쟁적이거나에 따라 당사국들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협상대상이 되는 문제들이 많아지게 된다. 한국과 칠레간의 FTA는 양국 간의 산업 및 무역구조는 보완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협상점을 찾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 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하고 GATT 제 11조에 의하지 아니한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칠레는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약 96%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자유화 비율 면에서 균형을 이루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카테고리 농산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하고 민감도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부과, DDA 협상 타결 후 논의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배정하는 품목으로 설정하였다. 칠레 측 양허 안은 즉시철폐, 5년 내 철폐(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7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 13년 내 철폐, 자유화 제외 등 6개로 구분된다.

한국·칠레 FTA에 의하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WTO 및 GATT 1994 규정등 WTO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른 조치는 FTA상의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은 11개의 부와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품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외국 상품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상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아니다.

보조금이라 함은 WTO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금전적 기여가 제공되고 있고 그러한 기여가 “혜택”을 주는 것인 경우를 말한다. 금전적 기여라 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정부소유 기업까지 포함)에 의하여 직접적 자금이전, 세입포기 또는 징수불가, 일반적 인프라 이외의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물품의 구매 등을 말한다. 정부가 조달기관에 지급하거나 민간기구로 하여금 금전적 기여를 제공하도록 하는 위탁, 지시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특혜”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계조치의 목적상 혜택의 존재여부와 금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동 FTA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칠레 FTA에서도 양 당사국은 WTO 반덤핑조치 관련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WTO 규정에 따라 취한 반덤핑조치는 협정상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당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이를 WTO 관할 하에 두고 있다.⁹⁾

2)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FTA의 경우는 WTO 반덤핑규정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첫째, WTO 반덤핑협정상의 최소덤핑 마진의 크기를 2%에서 5%로 확대하였고 둘째, 새로운 5%의 최소덤핑 마진 기준을 최초 조사단계에서 적용함은 물론 이를 재심단계에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WTO협정상의 무시할만한 수입수량 기준 역시 3%에서 5%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덤핑수입물량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대표기간이 통상 최소한 12개월이 되도록 하고 다섯째, WTO 협정상의 5년인 자동 종료 재심기간을 3년으로 단축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외에도 통고 및 협의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였다.¹⁰⁾

3) NAFTA

1994년 1월 발효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과 캐나다의 FTA를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멕시코가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이다. 여기에서는 각 국가의 반덤핑법이나 상계조치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를 통한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패널(panel)을 설치하여 개별 조치에 대한 마찰을 해소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FTA의 경우 양국이 현행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을 보유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것을 서로 사용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대신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부과에 관한 각각의 국내행정당국의 결정이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국내재판소를 대신할 수 있는 양국간의 소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¹¹⁾

또한 NAFTA에서도 이러한 소위원회의 절차를 통하여 체결국간의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

9) 한국-칠레 FTA 제7.1조 제1항 :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GATT 제6조,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반덤핑협정)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하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제2항 : GATT 제6조 및 반덤핑협정에 따라 취해진 반덤핑조치 그리고 GATT 제6조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상계조치는 이 협정 제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0) L. W. Ildeman, "Alliance and Networks : The Next Generation", *Int JTechnology Management*, Vol.15, 1998, pp.96-108.

11) 안민호, "DDA 규범협상의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11.10., p.12.

에 대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당해 행정결정을 환송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이와 같은 것이 국내재판소와 유사한 권한을 양국 간 소위원회라고 하는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구에 부여한 것이 NAFTA 제19장에 제시되어 있다.

NAFTA 제19장과 미국-캐나다 FTA 제19장을 비교하면 미국-캐나다 FTA 제19장은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에 관한 양국 간 소위원회를 기한을 정하여 도입하였지만, NAFTA 제19장은 소위원회를 반영구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설치하였다. 또한 반덤핑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의 결정의 구속성과 특별이의 신청절차를 더하여 사법적인 성질을 더욱 강화하였다. 양 조항은 모두 보다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의 분쟁의 정치화를 배제하고 공평하게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²⁾

4) 한국-미국 FTA

한국과 미국의 FTA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통보 및 협의, 약속,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였다. 통보 및 협의는 일방 당사국이 타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때, 조사 개시 이전에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¹³⁾ 약속이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 판정을 내린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약속 제한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¹⁴⁾ 마지막으로 무역구제위원회의 설치인데¹⁵⁾ 이 무역구제위원회는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된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과 미국의 FTA 제10.7조 제3항과 제4항의 준수를 포함한 내용에 대한 이행을 감독하고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주된 역할로 되어있다.

2001년 한국과 미국 간의 FTA 교섭비용과 유리한 점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하도록 한다면 양국의 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며, 양국 각

12) 平覺, 北米自由貿易協定(NAFTA)의紛爭處理手續, 國際經濟法 第3號 日本國際經濟法學會, 1994, p. 117.

13) 김봉철, "FTA 체결에 의한 한국 무역구제법규의 변화", 『Trade Remedy Review 2007-겨울』, 무역위원회, 2007. 7.

14) 한국-미국 FTA 협정문 제10.7조. 4항 나.

15) Chung, Y. S. An Empirical study of Success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ystem Outsourcing the University of Nebraska, 1996, pp.34-40.

각의 기존 무역 흐름이 양국 간의 무역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변화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분야의 상품은 미국의 대한국 수출상품·서비스의 약 60%(주로 전기기계 및 장비, 항공기, 과학장비, 유기화학물 등)이며 한국의 대미 수출품의 80%(주로 자동차, 통신장비, 반도체, 컴퓨터 및 부품과 의류)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002년 한국과 미국간 무역의 30%가 Harmonized Tariff Schedule chapter 85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전기기계·장비(주로 반도체와 컴퓨터와 부품)이다. 컴퓨터 칩 무역의 경우 양국은 확실히 “동일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라는 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은 하이테크 프로세서와 칩을 한국은 주로 메모리칩을 수출하고 있다.

실체로 한국의 “동일산업 내 무역”은 오랫동안 꾸준히 증가하여왔지만 미국과의 그러한 무역량은 한국의 다른 무역대상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러한 추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동일산업 내 무역의 확대는 어느 정도까지는 비 동일산업 내 무역보다 일반적으로 조정(adjustment)문제가 훨씬 작으며 향후 무역마찰의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간의 무역관계는 그 규모로 보아 필연적으로 많은 무역마찰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한국의 대외무역장벽에 관한 2003년 보고서에서 미국이 FTA를 체결하거나 체결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분량이며 일본, 중국 및 EU만이 한국보다 많다.

가장 지속적으로 두드러진 문제는 자동차분야, 반도체부문, 반도체 및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 측으로서는 한국내의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제한이 여전히 미국회사의 주된 우려사항이라고 보아왔다. 자동차에 높은 관세는 제조업분야 상품의 평균부과액과 거의 같지만 미국 자동차의 판매는 주로 수입품은 대형자동차에 부담이 가중되는 판매세에 의하여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이 미국 내의 새로운 상계관세관련 제소를 야기할 수 있다. 2003년 4월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미국수입이 50%이상의 상계관세 적용대상이 된다는 예비결정을 발표하였다. 그 밖의 미국의 관심 사항은 영화쿼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과도한 규제 및 의약품 가격책정관행 등이다. 농업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쌀 시장 접근을 대단히 제한적이며 기타 농작물의 수입관세도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 왔다.

한국·미국 FTA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94% 품목은 3년 이내 철폐하고, 기타는 5년, 10년, 12년 15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미국수출품에 대한 물품처리 수수료제도도 폐지되지만 한국의 조정관세를 유지되며 기준세율도 인정된다. 한편,

동 협정은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또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자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양자 간 긴급수입제한조치제도에 의하여 농산품 등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2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산품 중 쌀 기타 쌀과 관련된 상품은 자유화로부터 배제하였으며 특히 한국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식용과 가공품의 세 번 분리를 통하여 별도의 취급을 하고 계절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산물과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제도를 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FTA의 발효로 인한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섬유분야의 경우 관세제거 후 10년 동안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반덤핑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행정처분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과 미국의 FTA에서는 분쟁해결을 한국-미국 FTA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WTO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반덤핑조치에 대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 즉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역내국에서 반덤핑마찰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더욱 난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 > 주요 FTA에 있어 반덤핑규정의 유형분류

대분류	세분류	해당 지역무역협정	비고
반덤핑의 폐지 또는 경쟁법으로 대체유형	당사국들간 반덤핑조치 적용 배제 유형	▷EFTA-싱가포르 FTA(제16조):덤핑방지를 위해 협정상 경쟁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칠레-멕시코 FTA(제20조):협정발효 1년 후 당사국들간 반덤핑조치철폐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명시 ▷캐나다-칠레 FTA:반덤핑조치의 적용 배제를 당해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연계함 ▷EFTA(제36조) ▷EEA(제26조):농산물에 대해서만 반덤핑조치 적용 권리를 예외적으로 인정(제8조 제3항) ▷ANZCERTA(1990년 개정):협정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치 적용 배제	이들 지역무역협정 당사국들은 WTO협정에 따라 제3국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됨
	반덤핑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 하는 유형	▷EFTA-싱가포르 FTA:협정 제5장의 경쟁조치에서 규율 ▷관세동맹인 EEC의 경우 공동의 경쟁정책이 적용되고, 반덤핑조치는 비적용	

대분류	세분류	해당 지역무역협정	비고
강화된 반덤핑법의 적용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유형	▷뉴질랜드-싱가포르 FTA(제9조):최소 덤핑 마진 5%, 제심단계에서도 최소 덤핑마진 적용, 무시할 만한 수입물량5%, 자동재심을 3년 후 적용 등 ▷한-미 FTA(미발효)(제10조):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에 대한 상호 협의 등을 통한 운영강화 ▷NAFTA(제1902.1조)	NAFTA는 각 당사국 반덤핑법의 WTO협정과 합의 여부와 반덤핑 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사를 양국간 패널에 요구함
WTO 반덤핑법의 준용 내지 역내국의 반덤핑규정 적용 유형	WTO 반덤핑협정의 준용 유형 FTA 당사국의 반덤핑법 적용 유형	▷한-칠레 FTA(제7조) ▷EC-멕시코 FTA(제14조) ▷일본-싱가포르 EPA(제14조) ▷미국-싱가포르 FTA(제2.13조) ▷칠레-멕시코 FTA(제2-01조)	한-칠레 FTA는 반덤핑조치분쟁에 대해 당해 협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WTO 절차에 따르도록 함

자료 :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가 제작성.

3. WTO 반덤핑법의 준용과 역내국의 반덤핑규정 적용 규정

FTA 체결국들은 WTO 반덤핑조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유형인데 먼저,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는 각 당사자가 WTO 반덤핑협정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반덤핑조치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WTO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¹⁶⁾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당사국에 대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GATT 1994 제6조,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여 적용된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16)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14조(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Community and Mexico con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d from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17) 일본-싱가포르 FTA 제14조(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5.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imposing, at any time,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s of the other party : ...

(b) any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applied consistent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of GATT 1994,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he Tariffs and Trade 1994 and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FTA 역내국들의 반덤핑규정을 그래도 적용하는 유형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FTA의 경우 협정상 관세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된 반덤핑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할 뿐 달리 반덤핑조치의 행사에 대해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당사국은 각기 자국의 반덤핑법규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게 된다.¹⁸⁾

칠레-멕시코 FTA의 경우 반덤핑조치의 적용에 대해 달리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 협정의 적용상 관세에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칠레-멕시코는 양국 간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있어 자국 반덤핑법규에 의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협정 발효 1년 후 상호간에 반덤핑관세를 철폐하는 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¹⁹⁾하고 있다.

Ⅲ.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경제적 효과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지역무역협정을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 union) 또는 NAFTA와 EU 등과 같이 2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시장(common market)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서비스 포함 여부 등의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 국가별 제품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접근하는 방법 등과 같은 산업연구제 수단을 다루는 정도에 따라 광범위한 종류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의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지역무역협정을 무역정책과 동일시하는 점이며, NAFTA나 EU를 공동시장으로 간주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과 경제통합을 어떻게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

18) 미국-싱가포르 FTA 제2.13조 (DEFINITIONS) (b)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that is applied pursuant to a Party's domestic law.

19) 칠레-멕시코 FTA Article 2-09 (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 customs duty includes any customs or import duty and a charge of any kind impos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including any form of surtax or surcharge in connection with such importation, but does not include any :

(b)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that is applied pursuant to a Party's domestic Law

Article 20-08 (Future Negotiation)

(b) begin negotiation to reciprocally eliminate antidumping duties, one year after this Agreement comes into force at which time it shall appoint negotiations and establish appropriate procedures :

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무역협정을 2개국 또는 다수 국이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각각 자국시장을 개방하여 하나의 경제적 조직체를 형성한 후 상품 등의 국제적 이동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철폐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실시하는 경제적 조직체를 형성하려는 협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지역무역협정은 세계무역기구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의 대표적인 예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외가 1990년대 이후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 규모로 세계 13위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 수출규모를 본다면 유럽 15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홍콩,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타이완 등의 순서이다.

이 중에서 EU는 그 자체가 지역통합의 대표적 모델이고,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다른 ASEAN국가들과 함께 ASEAN FTA(AFTA)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1월 13일 싱가포르와 FTA를 실현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일부인 홍콩은 물론 타이완과도 사실상 화교 경제권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RTA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우선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RTA 추진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의견수렴 및 외국과의 협상에 관한 절차와 제반지원수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업계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관 협력 채널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어 정부와 경제단체 모두 외국 카운터 파트너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RTA는 상대국이 호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므로 후보군에 속하는 나라들과 구체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RTA 추진은 시급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정도를 밟아야 할 것이며 늦은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역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추진과 체결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L. Summers와 J. Frankel 등 일부 정치경제학자들은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결점을 보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후생 증진에 의해 WTO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역주의(regionalism)가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조치로 인해 다자체를 위협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지역주의의 일반적 영향과 지역주의 다자주의에 대한 보완 또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상충관계 등 지역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혜국대우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GATT/WTO 체제에서 예외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특히 현실적으로 WTO설립 이후에 지역무역협정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상호 보완관계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RTA가 급증하는 이유를 다자간 무역자유화교섭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WTO 회원국수의 증가와 광범위한 의제의 채택으로 다자간 교섭이 복잡화·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자간 국제규범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수 국가 간에 복잡한 국제무역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차선택으로서 RTA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최근 RTA의 증가는 이러한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최근 DDA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대한 WTO회원국들의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DDA교섭과 WTO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경제규모가 작은 소국의 경우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RTA를 선택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는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제공받았던 특혜적 시장접근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셋째, RTA는 개발도상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90년대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반시장적인 경제개발전략을 포기하고 개방적·시장 지향적 개발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RTA를 통한 시장경제적 학습효과는 이들 국가들의 다자간 세계무역 체제로의 편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RTA가 추진되는 경우가 강하다. WTO의 경우 투자, 경쟁정책, 서비스무역, 환경문제, 노동기준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적 무역과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무역협정에서 효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추진

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보다 심화된 통합형태(deeper integration)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무역과제들에 대한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경쟁적 RTA정책이 RTA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RTA 경쟁에서 다른 국가에 뒤처진다는 위기감이 각국으로 하여금 RTA 추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하나의 RTA교섭이 다른 RTA교섭을 유인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RTA와 비교하여 최근 전개되고 있는 RTA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RTA에는 가맹국수의 증가를 통한 통합의 외연적 확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EU의 경우 6개국을 원회원국으로 1958년 관세동맹으로 설립되었지만, 그 후 가맹국 수가 증가하여 현재 회원국 수가 27개국에 이르고 있다. 또 미주 지역에서는 NAFTA와 MERCOSUR를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지역(FTAA)이 교섭중에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도 ASEAN이 그 회원국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외연적 확대는 RTA를 범대륙적 지역무역 블록으로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통합의 질적 심화가 최근 RTA의 특징이 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 EU를 들 수 있다. EU는 관세동맹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통화동맹단계로 통합을 심화·발전시켜왔으며, 이러한 통합의 심화는 90년 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또 통합의 정도가 완만한 FTA에서도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투자 자유화, 분쟁해결제도 등을 포함하는 보다 심화된 형태로 통합이 전개되고 있다.

셋째, 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의 전통적인 통합개념보다는 지정학적 요인과 관계 없는 전략적인 시장접근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 지역 횡단적 RTA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RTA에서는 EU, NAFTA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한국-칠레간 FTA와 같이 서로 다른 대륙 국가 간의 FTA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 RTA는 다국 간 RTA 보다 2국간 쌍무적 RTA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후술 하는 바와 같이 WTO에 통보된 194건의 RTA 중 157건이 쌍무적 RTA이며, 특히 2001년 이후에는 쌍무적 RTA가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RTA의 확산은 차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파게티-바울현상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다섯째, 각국 또는 지역무역협정들이 복수국과 동시다발적으로 RTA를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술 한 바와 같이 RTA 경쟁에서 다른 국가에 뒤처진다는 위기감이 각국으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RTA 교섭을 추진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RTA의 도미노현상은 각국으로 하여금 동시다발적으로 RTA를 추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 간에 통합이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발전단계가 상이한 하나의 대국과 소수의 소국들에 의해 RTA가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NAFTA는 대국인 미국과 상대적으로 소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간에 결성되었으며, EU의 새로운 가맹국인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고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에 속한다.

2. 경제적 효과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역내 회원국들에 대한 효과와 역외 비회원국들에 대한 효과 및 세계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에 따라 역내외 국가들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지역경제통합이라고 하더라도 회원국들의 경제 환경의 차이나 구체적인 통합협정 내용에 따라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지역경제통합 형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정이 필요하며 실증적인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 경제통합을 이룩한 국가들의 구체적인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무역협정은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동시에 자유화하기도 한다. 무역거래는 협정체결 이전보다 낮은 무역 장벽으로 자유화되는 반면에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원산지 여 어디냐에 따라 국내의 상품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곡되기도 한다.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역내 회원국들이 이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는 협정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교역조건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는 더욱 복잡하게 나타난다.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국가들의 지역경제통합이나 규모가 작더라도 많은 국가들의 경제통합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회원국들 사이의 교역조건도 변화하지만 비회원국들과의 교역조건도 변화하게 된다.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자국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국가와 통합을 하거나, 비회원국들과의 무역거래를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제적 이득의 고려와 함께 정치적 혹은 단지 지역적으로 근접한 이유도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형성이 반드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다.

지역무역협정이 가져오는 자원배분상의 효율성 증대나 교역조건 개선에 통한 경제적 이득의 증가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점은 경제통합의 결과 회원국들 상호간의 자유무역의 확대

로 보호무역에 길들여져 있는 국내시장을 부분적으로 해외경쟁에 직면케 함으로써, 완전한 시장개방에 앞서서 국내시장을 해외경쟁에 노출시켜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확장된 시장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의 확장과 보다 다양화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기존의 지역무역협정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회원국 간 무관세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단가를 낮추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생산과 수출을 특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볼 때 무역장벽의 철폐가 시장가능에 의한 역내 자원분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촉진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자유무역이론에 입각한 논리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데 Grinspun & Cameron (1994)은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멕시코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보다는 멕시코의 미국자본에 대한 불균형적인 경제성장과 멕시코가 비교우위를 지니기 위한 임금의 동결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 그에 따른 민주화 과정의 후퇴와 노동자들의 권리가 옹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관하여 회의적으로 보았다.

무역장벽의 철폐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 효과로서 무역 창출효과, 장기적 효과로서 규모의 경제, 경쟁 촉진 및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들 수 있고 부정적 효과로서는 단기에 나타나는 무역전환효과를 들 수 있다.

1) 긍정적 효과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교역으로 인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Viner에 따르면 교역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이다.

무역창출효과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효과로 역내관세의 철폐로 인하여 회원국들이 높은

가격의 국산재화를 낮은 가격의 회원국내의 외국재화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역내국들은 비싼 국산재화를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관세로 인해 야기되었던 교역구조의 왜곡이 시정됨으로써 각국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교역기회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무역창출을 통한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 상품의 시장 확대는 동 상품의 수출증대를 의미하고 그것은 산업의 생산량 증대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각 생산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 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한 효과가 단기간 내에는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동태적인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규모의 경제 및 경쟁 촉진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러한 가운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경제에 동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인한 역내 생산활동의 평균비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다면 역내재화가 역외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능가하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경쟁촉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기업들 간의 가격경쟁으로 재화가격의 인하는 물론 재화공급과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이 촉진된다. 또한 경쟁의 심화,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 간의 R&D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은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는 생산성의 증대, 실질소득의 증대, 소비자 후생의 향상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긍정적 효과들은 역내 상품교역과 기술교류 등을 통하여 역내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되고, 따라서 역내 경제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 내 무역장벽 철폐는 무역효과뿐만 아니라 역내외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 기업의 생산 활동을 역내로 유인하는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즉 역내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 또는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역내 무역장벽의 철폐는 기업의 역내 경제활동비용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서 기업의 이윤창출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역내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안정성 제공 등은 역외기업들이 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도록 유인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주요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을 역내에서 조달하고자 할 경우 이를 다른 역외기업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역내 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운송·정보비용 절감 및 무관세혜택 등으로 기업의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은 역외기업이 역내로의 투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역외국가에게는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역내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내 해외직접투자 추진에 강한 매력을 줄 수 있다. 만약 역내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역외 선진국들은 이러한 유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역내 개도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기술이전 효과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역내 유희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NAFTA의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NAFTA 회원국 중 경제발전 정도가 가장 낮은 멕시코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이유는 NAFTA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무차별 대우, 투자 의무 이행 요건²⁰⁾ 폐지,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 국제법 절차에 따른 투자 몰수, 투자 협정 위반 시 국제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 투자에 대한 규정 설치로 대 멕시코 투자의 위험성을 한층 낮춰줌으로써 미국과 캐나다의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2) 부정적 효과

Viner에 의한 부정적 효과는 단기에 나타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이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 철폐로 인하여 저가의 지역경제통합 외의 재화가 높은 가격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무역협정 이전에는 역외국의 재화가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협정체결 이후 역내국간의 교역에 관세가 제거됨으로써 역내국의 재화가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과 이전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역외국 재화가 더 싸다는 것이므로 싼 역외상품을 비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0) 이계영, “지역무역협정에 있어 반덤핑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09.9, pp.56-67.

Viner의 연구는 최종재화에 대한 관세철폐로 인한 생산 활동의 효율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무역창출효과를 후생증가요인(정(+))의 효과, 무역전환효과를 후생감소요인(부(-))의 효과)으로 구분하여 무역창출의 이익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능가할 경우에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한다.²¹⁾

<표 1>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지역 무역협정의 효과	긍정적 효과	단기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 국내상품 대신에 상대적으로 싸진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창출
		중·장기적 효과	1.역내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무역증가의 효과	역내국의 규모경제 달성	· 시장확대, 규제의 표준화, 시장접근의 안정 등에 의한 실현
				경쟁촉진효과	·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용이하게 되어 역내 수입품과의 경쟁강화
				· 기술력, 산업network의 이용가능성 증대	
		2.비용절감효과	· 역내국의 규제장벽기준 등의 표준화 및 간소화 등으로 인한 수출비용의 감소		
		3.투자효과	· 회원국으로부터 역내투자증가		
		4.역내경제의 구조 조정 효과	· 역내국기업과 경쟁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		
부정적 효과	단기적 효과	5.무역전환효과	·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싸진 역내국의 수입으로 전환 · 역내수입이 세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감소로 해당상품 가격하락에 인한 교역 조건 악화		
기타		6.정치·외교적 효과	· 정치·외교적 연대감 강화		

자료: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정리.

3) 기타효과

소수 국가 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관련 국가들의 경제적 공동번영 외에 정치적 안정 및 민주적 제도의 정착 등 정치·외교적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²²⁾ 또한 지역무역협정

21) 임병우, “반덤핑절차에서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확정에 관한 몇 가지 실무적 문제점 및 제언”, 『무역구제』 제23호, 2006.7. pp.19-27.
 22)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1997년 7월6일 총선에서 멕시코제도혁명당(PRI)의 69년간의 장기집권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입지확보에 공헌한 바 있다.

회원국 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 시 공식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 및 협력 도출에도 도움이 된다.²³⁾

지역무역협정의 행정적인 절차나 분쟁해결 관련 조항에 의해 회원국 간에 설치되는 위원회 및 패널 등은 회원국들 간의 관계개선 및 협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분쟁해결 절차를 구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대치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 국가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업계와 의회가 한반도의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IV. 지역무역협정의 반덤핑제도 대응전략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과다 생산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또는 수요의 변동과 같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덤핑을 할 수 있으며, 혹은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추후에 독점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약탈적 의도에서 덤핑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덤핑의 동기가 무엇이든 덤핑은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고 국제적으로는 분리된 시장이 존재할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가격 차별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격차별과 덤핑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바, 경쟁정책에서의 가격차별의 개념이 무역정책에서는 덤핑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 간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무역정책에서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수출, 즉 모든 가격차별이 반덤핑 조치의 대상이 되는 반면, 경쟁정책에서는 일반적 개념의 가격차별보다는 약탈적 가격설정이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반덤핑법은 외국기업의 저가판매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데에 규제의 일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국내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가 규제대상이 되며, 경쟁법은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에 규제의 일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약탈적 가격설정이나 부당영가 판매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탈적의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반덤핑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학적 당위성이 없으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내 산업을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23) 하충룡·한나희, “반덤핑법의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9, p.23.

보호하는 보호주의적 효과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반덤핑제도는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first best policy)이 아니며, 오히려 최상의 정책은 독점적 지배를 감소시킴으로써 덤핑을 할 수 있는 능력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현행 반덤핑제도를 폐지하고 덤핑규제는 경쟁정책과 경쟁법 하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와 같은 개선이 어려울 경우 반덤핑의 원칙 및 절차를 경쟁법의 원칙 및 절차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한 반덤핑정책을 경쟁정책과 보다 많은 연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덤핑혐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약탈적 독점적 가격차별이 입증되도록 하며,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경쟁원칙과 절차에 따라 관련 가격설정행위의 반경쟁적 효과가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탈적 의도의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탈적 가능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그와 관련된 특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덤핑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점유율 및 집중률(concentration ratio) 등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혹은 평균비용 또는 한계비용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약탈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당해 산업의 특성 및 경기변동이나 환율변동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덤핑규제를 경쟁정책이나 경쟁법 하에서 다루는 데에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있다. 첫째, 국내에서의 불공정한 가격차별을 다루는 경쟁법의 기준이 국제무역에서의 불공정한 가격차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가격차별에 대한 규제가 국내의 불공정한 가격차별에 대한 규제와 일치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덤핑규제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의 보장은 반덤핑규제가 보호무역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를 초월한 경쟁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 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각국 시장 간의 연관성은 한층 증가되고 있으며, 경영환경 역시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경쟁법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는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지만, 그 이전에 각국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인정 등을 통하여 협력적인 법집행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경쟁정책 및 경쟁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진입장벽의 증가 및 특정 무역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하는 경쟁감소라고 할 수 있다.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한, 범국가적 경쟁정책은 실효를 거

두기 어렵다. 자유무역은 시장개방을 통하여 특정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감축시킴으로써 덤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위축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장간의 가격차별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덤핑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하에서 효과적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당위성이 결여된 반덤핑제도의 필요성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덤핑을 제거하는 데에는 결국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강력한 시행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에 있어 반덤핑규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제무역에서 덤핑 자체가 비난(condemn)받을 수는 있지만, 수입국의 소비자 후생 관점 등에서 보면 반덤핑규제는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대기업이 자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통하여 수입국 시장을 침탈할 목적으로 덤핑 등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수입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개별 국가의 반덤핑법은 WTO 반덤핑협정과 명시적인 적합성은 존재하나 개별국가마다 그 운용 및 절차상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이 반덤핑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도 있는 반면에 반덤핑조치를 행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전혀 반덤핑조치를 활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반덤핑법의 운용과 절차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⁴⁾

셋째, FTA 등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역내국간의 상품교역에 있어 자유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분석하여 이와 관련하여 수출확대가 효율적인지 아니면 자국 산업의 피해구제가 선결되어야 할 조치인지를 먼저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반덤핑법을 역내국간에 적용하는데 있어 폐지할지 또는 강화된 조치를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법과 경쟁법은 일반적으로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으로 대변되어 논쟁이 이루어져왔다. 무역정책의 경우를 보면 본래 자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생산자의 이익과 같은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무역정책은 국가 전체의 후생증진이 이념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

24) 김석민, “중국의 반덤핑 제정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6.9, p.211.

으로는 생산자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경쟁정책의 주된 목적은 생산자의 보호가 아니며 오히려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²⁵⁾ 이러한 점에서 반덤핑규범과 경쟁규범의 상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조화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지역무역협정에 있어 수입국의 반덤핑제도가 있을 경우 해당 수출국의 경쟁정책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 경쟁정책 당국은 수출기업의 덤핑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에 긍정적인 판정이 나올 경우 수입국은 이에 대한 피해구제조치를 취하되, 부정적인 판정이 나올 경우 이를 WTO체제 안에서 해결 방안을 취하면 될 것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쟁법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한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모델법적인 차원의 경쟁법을 통하여 역내국간의 채택을 통한 지역무역협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WTO 차원에서도 경쟁정책의 도입에 있어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무역규범을 논의하는 WTO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둘째,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양자협정으로 접근 할 수도 있는바 WTO 다자경쟁규범이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자협정이 왜 양자협정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경제발전단계가 각기 다른 국가 간 실제 규정이 수립되기 어렵기 때문인 이유가 있다. 특정 경제행위의 경쟁적 효과는 시장구조, 경쟁자간의 질적 차이, 경제발전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으로 이로 인한 규정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²⁶⁾

양자 간의 지역무역협정 등에서는 보다 용이한 경쟁법의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역내국간 일정한 모델규범을 통한 경쟁법을 채택한다든가 경쟁법에 대한 내용을 상호 협상을 통하여 경쟁법의 내용을 조절해 나갈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아가 다자체제와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도 있다. 즉, 여러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의 기업 활동의 추세에 있어 지역무역협정만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경쟁법의 법적 구속력을 갖고 경쟁법의 적용 등에 대한 해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WTO체제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25) 조영재, “반덤핑 조사대상 범위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제24호, 무역위원회, 2006.10, pp110-116.

26) 윤미경, “WTO 경쟁규범 협상 : 문제점의 분석과 재정방향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9, 제9권 제3호, p. 25.

V.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현황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최근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현저한 특징인 RTA의 확산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를 토대로 RTA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WTO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DDA 협상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반덤핑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가격차별이나 비용이하 판매는 건전한 시장경제에 있어서 매우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가격설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그와 같은 행위가 약탈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경우, 이는 반경쟁적 보다는 소비자의 복지향상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적극적이고 공정한 경쟁적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반경쟁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효과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적 당위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덤핑에 대한 기계적 정의에 기초한 현행 반덤핑제도는 불공정한 가격설정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의 정책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덤핑의 반경쟁적 효과 및 약탈적 의도에 근거한 강력한 경쟁정책의 실시가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경쟁정책의 실시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덤핑의 근원자체를 없애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현행 반덤핑제도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반덤핑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국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동종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볼 경우 이에 대한 조치로서 취해지는 것이다.

위의 운영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무역협정에 있어 반덤핑조치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쟁법으로 대체하거나, 강화된 반덤핑법을 규정하거나, 마지막으로 WTO 반덤핑법이나 역내국의 반덤핑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유형인데 종합하여 보면 교역의 자유화와 동시에 덤핑조사나 조치 등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강화된 반덤핑법을 운영하거나 최종에는 반덤핑법 보다는 경쟁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동시에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에 있어서 반덤핑조치를 강화하거나 또는 경쟁법으로 대체하여 협상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위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반덤핑법의 규정 강화를 위한 현재 운영 중인 반덤핑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경쟁법에 가장 적합한 법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경쟁규범을 입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덤핑제도를 단기적으로 철폐하거나 경쟁정책으로 대체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모든 국가가 일정수준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을 도입해야 하며, 그에 대한 국가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덤핑제도가 경쟁정책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조화와 상호 인정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이행하는 중간단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반덤핑제도는 모든 국가들이 경쟁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를 올바르게 공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철폐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RTA를 다자화 된 RTA로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대륙별로 RTA의 다자화를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RTA 구조를 단순화하여, RTA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범세계적인 RTA의 다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관원, “반덤핑법 금지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토-지역무역협정에 있어서의 반덤핑정책과 경쟁정책”,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12집, 2002. 8.
- 고준성, “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산업연구원, 제12권 1호, 2003. 10
- 김봉철, “FTA 체결에 의한 한국 무역구제법규의 변화”, 「Trade Remedy Review 2007-겨울」, 무역위원회, 2007. 7.
- 김석민, “중국의 반덤핑 채심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6.9.
-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
- 노광·김지영,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의 RTA에의 작용에 관한 연구”, 「Trade Remedy Review

- 2007-겨울], 무역위원회, 2007. 12.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 무역위원회, 2009.
- 박형래·박영기, 「산업피해구제와 대외무역법」, 두남출판사, 2006.
-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고찰」, 국제법무과, 2003.
- 법무법인 충정, 「1차 생산품의 반덤핑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무역위원회, 2012.10.
- 법무법인 태평양, 「덤핑률 산정시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무역위원회, 2011.10.
- 안민호, “DDA 규범협상의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11.
- 윤미경, “WTO 경쟁규범 협상 : 문제점의 분석과 재정방향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9권 제3호, 2003.9.
- 이재영, “지역무역협정에 있어 반덤핑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09.9.
- 임병우, “반덤핑절차에서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확정에 관한 몇 가지 실무적 문제점 및 제언”, 「무역구제」 제23호, 2006.7.
- 조영재, “반덤핑 조사대상 범위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제24호, 무역위원회, 2006.10.
- 하충룡·한나희, “반덤핑법의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9.
- 하충룡·한나희, “사례를 통한 미반덤핑법상 상품의 범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9.
- 하충룡·한나희, “USITC의 반덤핑 피해판정에서의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해석범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12
- Bernard M. Hoekman and Petros C. Mavroidis, “Dumping, Antidumping and Antitrust”, *Journal of World Trade* 30(1), 1996, p. 34.
- Chung, Y. S. An Empirical study of Success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ystem Outsourcing the University of Nebraska, 1996, pp.34-40.
- L. W. Ildeman, “Alliance and Networks : The Next Generation”, *Int JTechnology Management*, Vol.15, 1998, pp.96-108.
- N. Nohria and N. Venkatraman, “Interorganization Information System via Information Technology: A Network Analytic Perspective”, Working Paper No. 1909-87, Sloan School of Management, MIT, 1987, p.77.

ABSTRACT

Promo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Korea's Anti-dumping Countermeasure

Moon-Kap Oh*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are a prominent fea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have been an important trade policy tool for WTO Members. RTA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over the last ten years and this trend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by the many RTAs being proposed and those currently under negotiation.

There has been a recent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making it necessary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taking advantage of anti-dumping measures between member countries of the RTA. Due to the complexity of anti-dumping laws and abuse of discretion by each nation, however, the basic goal of the RTA has not come to fru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the strengthening of anti-dumping measures in the RTA is desirable. A plan to use competition instead of anti-dumping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For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the fundamentals for the globalization of competitive rules to keep pace with the continuous expansion of FTA.

Key Words : Regional Trade Agreement, Anti-dumping Law, Countermeasure

*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Trade, Semyung University